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81
----------	-----

2016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 이명희 의원(찬성자 37명)
- 나. 발의일자 : 2016년 2월 5일
-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11일
- 다. 상정결과 :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3월 4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명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금까지 4대문 안의 조선왕조 600년에만 머물러 있는 서울역사 인식의 지평을 넓혀 2000년 유구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역사도시 및 역사도시 축제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6조).
- 역사도시 축제의 개최와 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 역사도시에 대한 시민교육을 규정함(안 제1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조례안 개요

- 동 조례안은 지역적으로는 4대문 안, 시기적으로는 조선왕조 6백년에 한정되어 있는 역사인식의 지평을 한성백제 이후 2천년으로 넓혀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서울을 경쟁력 있는 역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안임.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풍납토성이 한성백제의 도읍인 위례성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굳어지면서 서울의 역사는 2천년 고도(古都)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으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의 급격한 개발 등으로 역사문화자원의 훼손이 심각하여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조사와 체계적인 발굴·지정·보존·관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울역사를 6백년으로 인식하거나 역사문화를 향유할 기회와 관심, 역량이 부족한 시민이 다수여서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 및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 등 다각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험기회와 빈도, 정보접근성 제고로 세계인과 더불어 향유할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동 조례안을 발의한 이명희 의원이 주도하여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조명을 위한 문화관광정책개발 방안 연구’를 지난 해 수행한 바 있음.
- 서울시 또한 장기 마스터플랜인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15.7. ~ ’16.3.), 역사, 인문,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역사도시 서울 추진위원회’에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문화재과 내에 한성백제팀을 신설하기도 했음(’16.1.11.).
-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조성은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에 기반한 도시재생·활성화를 통해 서울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향유하며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 속의 역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다수 주민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단순한 행정행위나 예산조치를 통해 시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연구와 논의 결과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 조례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천년 역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21개 조에 걸쳐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사도시 축제의 개최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	목적	총칙규정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5조	시장의 책무		
제6조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역사도시환경의 조성		
제8조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체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회의		
제14조	의견청취		
제15조	수당 등		
제16조	운영세칙		
제17조	축제개최 등		
제18조	축제의 지원		
제19조	시민교육		
제20조	의견수렴		
제21조	시행규칙	보칙규정	
부칙		부칙규정	

-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체계를 보면 대개 처음에 그 자치법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규정(실체규정, 보칙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규정을 두고 있음.
- 동 조례안의 경우,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5조(시장의 책무), 제6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등 7개 조가 총칙규정이고 나머지 14개 조가 본칙규정(실체규정, 보칙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제8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부터 제16조(운영 세칙)까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9개 조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제17조(축제개최 등), 제18조(축제의 지원), 제19조(시민교육), 제20조(의견수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천년 역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과 도시재생·활성화의 공존 및 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서울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연구·교육·홍보 등) 시민이 향유·활용하기 위한 방안(박물관·유적지 관리, 전통문화행사·축제 개최 등),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민참여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정책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요구되지만

동 조례안은 그 중 일부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역사도시 기본계획과 역사도시서울위원회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라. 주요 조문별 검토

(1) 총칙규정

- 동 조례안의 총칙규정은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와 제5조(시장의 책무), 제6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등 시장의 의무를 규정한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ㄱ. 목적, 기본이념 규정

- 조례안의 목적 또는 취지를 규정한 목적규정은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하며

조례안의 조문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을 선언한 기본이념 규정은 목적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주요 방향과 정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목적규정과 별도로 기본이념 규정을 두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2000년 역사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도시경쟁력 있는 유구한 역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이 조선왕조 이후 600년이 된 도시가 아닌, 한성백제 이후 2000년 된 역사도시로서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따라서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의 발전이 동 조례안의 목적이라면

기본이념은 서울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발굴·향유·제고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정책과 공존 및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시민참여와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정도의 내용으로 보충하여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구체적인 조문을 규정하는 것은 역사, 인문,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및 논의와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ㄴ. 정의규정

-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인데 동 조례안은 “역사도시”와 “역사도시 축제”를 정의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도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현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적 자긍심과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 가. 역사적 품격과 정체성의 고양
 - 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의 조성
 - 다. 역사자원의 활용을 통한 도시활력 창출
 - 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 관련 산업의 진흥
2. “역사도시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역사도시 관련 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역사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역사적·문화적·예술적·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그 중 “역사도시”는 「“○○”이란 …을 말한다」 라는 일반적인 정의 규정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4개의 목을 결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하려는 용어의 체계상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며(예 : 「문화재보호법」 이 법에서 “문화재”란 …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동 조례안의 경우 각 목의 내용은 역사도시의 정의라기보다 역사도시 정책의 방향 또는 추진과제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 또한 “역사도시 축제”는 별도로 정의할 만큼 동 조례안에서 중요한 용어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의된 용어를 그 조항에서 다시 약칭함으로써 정의된 용어가 정의규정에서만 사용되는 문제와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정의규정에서 “관련 행사”, “… 등을 목적으로” 등의 불확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법제 기술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ㄷ.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 동 조례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 조례안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내용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임.
- 다만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조례처럼 조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본문에서도 법령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ㄷ. 시장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 동 조례안은 제5조에서 제7조까지 3개 조에 걸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환경의 조성 등 시장의 책무·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조성 및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역사도시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시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역사도시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역사적으로 조성하고, 서울의 2000년 도시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리고, 역사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이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 시책의 적극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2천년 역사도시 서울 구현 및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겠지만

동 조례안이 역사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역사도시 조성과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시장의 지원 의무를 중복해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2천년 도시유산을 “복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본칙규정

- 동 조례안의 본칙규정은 제8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제16조(운영세칙)까지 역사도시서울위원회 관련 9개 조와 역사도시 축제 관련 2개 조, 시민교육과 의견수렴 각 1개 조 등 실제 규정 13개 조와 보칙규정(제21조(시행규칙)) 1개 조 등 총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ㄱ. 위원회의 설치 규정

- 동 조례안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역사도시서울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제8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 그런데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법령상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고 해당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기준으로 ①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와 ②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와 ③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는 자문기관 모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일종이므로 조례로서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3조(직속기관) (생략)

제114조(사업소) (생략)

제115조(출장소) (생략)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ㄴ.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위원회의 설치를 제외한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9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제13조(회의)에서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통지기한을 7일로 정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긋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ㄷ. 축제 및 교육 관련 규정

- 동 조례안은 제17조에 제18조에서 축제의 개최와 지원, 제19조에서 시민교육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이 역사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향유·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제17조(축제개최 등) 시장은 시민의 역사도시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축제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축제개최자에게 개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민교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의 역사도시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서울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이 이를 향유·활용하며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와 교육 외에도

연구·홍보, 박물관·유적지 관리, 다양한 시민참여와 교류협력, 그리고 조직과 재정에 관한 사항까지 그 대강을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

마.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안으로
- 다수 주민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급격한 개발 등으로 훼손이 심각한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보존·관리와 시민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2천년 역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과 도시재생·활성화의 공존 및 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서울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이 향유·활용하기 위한 방안,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민참여와 교류협력, 그리고 정책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요구되지만

동 조례안은 그 중 일부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역사도시 기본계획과 역사도시서울위원회에 유보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역사, 인문,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및 논의와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소관 집행부인 역사문화재과는 동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검토의견서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소관 집행부는 동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지만

용역 완료 후 보고서 확정, 기본계획 수립, 집행부안 제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을 선언하는 조례를 제정한 후 그 내용은 차차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회의규정 일부를 수정함(안 제8조 및 제13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81
----------	--------

제안연월일 : 2016년 3월 9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고려하여 역사도시서울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회의규정 일부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역사도시서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위원회를 개최할 때 일시, 장소, 안전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 ## 3. 참고사항
-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중 “구성 및 운영”을 “설치”로 하고,
본문 중 “구성·운영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제2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8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제8조(----- 설치) ----- ----- ----- ----- 둘 수 있다.</p>
<p>제13조(회의)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회의) ② ----- ----- ----- 7일 ----- ----- -----.</p>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2000년 역사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도시경쟁력 있는 유구한 역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이 조선왕조 이후 600년 된 도시가 아닌, 한성백제 이후 2000년 된 역사도시로서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도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현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적 자긍심과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 가. 역사적 품격과 정체성 고양
 - 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의 조성
 - 다. 역사자원의 활용을 통한 도시활력 창출
 - 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 관련 산업의 진흥
2. “역사도시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역사도시 관련 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역사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역사적·문화적·예술적·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조성 및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역사도시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역사도시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역사적으로 조성하고, 서울의 2000년 도시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리고, 역사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역사도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대표 등
3. 시 관련 공무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축제개최 등) 시장은 시민의 역사도시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축제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축제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민교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의 역사도시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수렴)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시민과 역사도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